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5. 30.(금), 15: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08-12-028)(비공개)

2)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 (2008-12-029)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 허가 신청자격은 주된 방송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재단법인 형태로 제한함.
-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며, '외국인의 정보수요 충족', '거주 외국인의 참여보장' 등 도입취지를 감안한 세부심사 사항을 설정함.
-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 등을 평가하되, 공익적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출연금 액수나 기여 형태 등을 특정하지 않고 신청사업자 자율사항으로 제시함.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2인 등 총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방송정책국장으로 함.
- 기금지원이 없으며, 안정적 사업운영과 매체 영향력이 특수한 영어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광고를 허용함.

3)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12-030)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8년 12월 31일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진주문화방송 등 11개사(1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재허가 심사는 허가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조건 이행여부 평가, 향후 사업계획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이 중 방송평가 점수를 500점으로 함.
- 아날로그TV와 동시방송되고 있는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는 아날로그TV 방송국의 평가결과를 적용함.
-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자별로 방송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재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함.
-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며, 비계량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심사, 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을 임무로 함.

-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한 후, 필요시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기로 함.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으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2008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12-031)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9년 1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티브로드중부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PP수신료 지급과 관련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금번 재허가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 재허가 심사는 허가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조건 이행여부 평가, 향후 사업계획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이 중 방송평가 점수를 500점으로 함.
-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며, 비계량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심사, 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을 임무로 함.
-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한 후, 필요시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기로 함.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으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2008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12-01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9년 2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수도권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

중 심사배점을 수정하여 의결함.

- 심사배점 중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250점에서 150점으로 수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100점'을 추가함.
-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며, 비계량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심사, 필요시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을 임무로 함.
-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 등을 심사한 후, 필요시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기로 함.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으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건 (2008-12-03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07년 7월 개정된 방송법 및 '08년 2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외국방송을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재송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심사항목이 변경된 바, 이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처리절차를 담은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방송프로그램이 국적·성별·종교·인종 및 기타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채널 등에는 승인을 지양하기로 함.
-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준하는 외국방송은 상당수준 이상의 가시청자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인지도·신뢰성을 갖춘 경우 승인, 방송법 상 홈쇼핑 채널에 준하는 외국방송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국내 홈쇼핑 채널에 대한 역차별 문제, 상품 유통에 있어 소비자 권익보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승인 배제, 내국인을 주 시청 목표로 하는 외국방송의 경우 국내 방송사업 등록·승인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을 지양하기로 함.
- 승인 시 특정 국가의 방송에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우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방송 등에 대해서는 승인을 지양하기로 함.
-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함.

-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국내방송이 상대국가에서 재송신에 제한받을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함.
- 성인물이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위주의 방송,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 등에 대해서는 승인을 지양하기로 함.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시 부여할 공동 승인조건으로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 지사/사무소/대리인 및 채널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방송분야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의무를 부과,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송출현황 자료 및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 세부심사기준 개정시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재승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함.
- 기 승인되어 현재 송출되고 있는 외국방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 가급적 승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7)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2008-12-033)**

- 정진우 방송운영관의 보고를 받고, '07년 1월 개정된 방송법 및 '08년 2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규칙공포절차를 거치기로 함.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함)는 위원회 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2조제2항, 제5항) 보장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함(안 제2조제3항)
- 보장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국민관심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방송법 제76조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76조5의 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5조, 제6조)

사. 보고사항

1)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154개 징수대상 사업자의 2008년도 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보고받고,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6월 중순에 심의·의결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6월 4일(수)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7:30)